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665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4. 02. 27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 (제출자)	회부일	회의정보	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554	박석 의원	'24.02.07.	상정 · 심사	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('24.02.27.)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565	강동길 의원	'24.02.07.	상정 · 심사	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('24.02.27.)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570	민병주 의원	'24.02.07.	상정 · 심사	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('24.02.27.)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572	이민석 의원	'24.02.07.	상정 · 심사	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('24.02.27.)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596	이희원 의원	'24.02.07.	상정 · 심사	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('24.02.27.)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621	유정인 의원	'24.02.07.	상정 · 심사	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('24.02.27.)

-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(2024.02.27.)는 위 6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호수밀도 산정 시 노후·불량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,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인 ‘특정무허가건축물’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호수밀도 산정 시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.
- 현재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토록 규정되어 있어,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의 특성에 따라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, 이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하여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- 최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으로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, ‘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’ 등이 도입됨에 따라 주민이 구역계 등을 설정하여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‘요청’할 수 있게 된바,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,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시설 폐지 등 결정변경을 요청하는

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학교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, 의회 의견청취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, 이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-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,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역세권등의 범위, 공공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등 시·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-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상 ‘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’에 ‘통학로’를 명시함으로써 학교주변 통학로의 안전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의무임대주택 인수 시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매입비의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사업 여건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호수밀도 산정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됨을 명시함(안 제2조).

나. 재개발사업에서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‘3분의 2’에서 60

퍼센트로 완화함(안 제6조제1항제2호)

- 다.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의2 신설)
- 라.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함(안 제11조제1항제10호 신설, 제2항제6호),
- 마. 역세권 등 정비사업,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에서 건설·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,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비율을 각각 규정하고, 역세권 등의 범위를 정하며,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제2항 신설, 제3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, 별표 5 신설, 부칙 제2조 신설).
- 바.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를 제출할 때 통학로를 포함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(안 제26조제1항)
- 사.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(안 제42조제6항).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나목 중 “신발생무허가건축물”을 “특정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하되, 신발생무허가건축물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2조제2호나목2)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40을 말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노후·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이고 다음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) ① 법 제13조의 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, 토지등소유자 동의서,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, 구청장이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한 구청장은 그 즉시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,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,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요청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 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
1. 입안 요청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보

2.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,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

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

⑦ 시장은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“제1항 각 호”를 “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”로 한다.

10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 간의 변경

제26조제1항 후단 중 “대책에”를 “대책(통학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)에”로 한다.

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50”을 “60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4항) 본문 중 “50”을 “70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“역세권”이란 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)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 다만,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

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.

가.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

나.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“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”이란 「도로법」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·고시한 특별시도 중 20미터 이상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④ 영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(이하 이 조에서 “추가용적률”이라 한다) 중 법적상한 용적률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: 100분의 50
2.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: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

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구성한다.

1. 제4항제1호: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
2. 제4항제2호: 별표 5와 같다. 단,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⑥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20 이상

을 말한다.

⑧ 영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50을 말한다.

⑩ 영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50을 말한다.

제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추진중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 공람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.

[별표 5]

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 등(제30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 관련)

1.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이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. 단,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 60% 이상 70% 이하 범위 내에서 아래 표에서 제시하지 않은 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근사한 값을 적용한다.

(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) 국민주택규모 주택	(국민주택규모 주택 중) 공공분양주택 비율	(국민주택규모 주택 중) 공공임대주택 비율
60%	60분의 30	60분의 30
61%	61분의 33.5	61분의 27.5
62%	62분의 37	62분의 25
63%	63분의 40.5	63분의 22.5
64%	64분의 44	64분의 20
65%	65분의 47.5	65분의 17.5
66%	66분의 51	66분의 15
67%	67분의 54.5	67분의 12.5
68%	68분의 58	68분의 10
69%	69분의 61.5	69분의 7.5
70%	70분의 65	70분의 5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호수밀도”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<u>신발생무허가건축물</u>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</p> <p>다. ~ 바. (생략)</p> <p>6. ~ 12. (생략)</p> <p>제3조(재개발사업의 구분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)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특정무허가건축물</u>은 포함하되, <u>신발생무허가건축물</u> ----.</p> <p>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재개발사업의 구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법 제2조제2호나목2)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40을 말한다.</u></p> <p>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) ① ----- ----- -----.</p>

1. (생략)

2.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(주택
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
는 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[법 제
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
도시계획위원회 또는 「도시
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
(이하 “도시재정비법”이라 한
다)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
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
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
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
천제곱미터] 이상으로서 다음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지역

가. ~ 다. (생략)

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노후
· 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
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
센트 이상인 지역이고 다음 -
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
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) ①
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
당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구
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
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

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토지등소
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
받아야 한다.

②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3조의
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
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11
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
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에 전
체 토지등소유자 명부, 토지등
소유자 동의서, 구역계를 첨부
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
다.

③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
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
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
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
려야 하며, 구청장이 번호 부여
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
다.

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번호
를 부여한 구청장은 그 즉시 자
치구 인터넷 홈페이지, 해당 구
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
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에 구
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
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

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,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등 소유자가 제출한 요청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 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
1. 입안 요청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보
2.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,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

⑦ 시장은 영 제11조의2제8항에

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
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
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
할 수 있다.

제11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

①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
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
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
말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②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
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를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
제26조(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)

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
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“시·
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영

제11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

① 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
기반시설 중 학교와 법 제2조
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
중 공공공지 간의 변경

②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--
--

제26조(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)

① -----

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 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, 비산먼지·소음·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0조(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 등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----. -----

----- 대책(통
학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)
에 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“역세권”이란 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)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 다만,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

<신 설>

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.

가.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

나.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“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”이란 「도로법」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·고시한 특별시도 중 20미터 이상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④ 영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(이하 이 조에서 “추가 용적률”이라 한다) 중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: 100분의 50

<신 설>

<신 설>

③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른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. 다만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

2.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: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

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구성한다.

1. 제4항제1호: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

2. 제4항제2호: 별표 5와 같다. 단,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⑥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.

⑦ -----

--- 60----- . <단서 삭제>

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④ 법 제101조의6제2항에 따른 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법 제101조의6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. 다만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42조(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) ① ~ ⑤ (생략)
⑥ 시장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 <단서 신설>

⑧ 영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50을 말한다.

⑨ -----

----- 70 -----
----- . <단서 삭제>

⑩ 영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50을 말한다.

제42조(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-----

----- . 단,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

1. ~ 3. (생략)

⑦ ~ ⑨ (생략)

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⑦ ~ ⑨ (현행과 같음)